

작성 방법

1. 이월과세적용대상 자산·사업용자산 및 부채명세는 각각 별지로 작성합니다.
2. "⑮ 취득가액"란 및 "⑰ 양도가액"란은 "⑩ 이월과세"란의 금액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기준시가를 기재하고,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을 적습니다.
3. "⑯ 양도일"란은 통합일(법인전환일) 또는 현출출자일을 적습니다.
4. "⑳ 사업용자산의 합계액"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을 시가로 평가한 후 그 합계액을 적습니다.
5. "㉓ 순자산가액"란은 소멸하는 사업장의 사업용자산에 대한 시가의 합계액에서 부채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을 적습니다.
6. 「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」 제63조제10항 및 제65조에 따른 이월과세는 "㉑ 사업용자산의 합계액(시가)"란부터 "㉔ 순자산가액"란까지는 적지 않습니다.